



제1753호
2023년 2월 13일
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공 고 제 3 3 2 호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식 품 위 생 과 2
공고
- 공 고 제 3 5 1 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 단속 개시에 따른 행 교 통 행 정 과 3
정예고
- 공 고 제 3 5 5 호 「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 입법예고 및 여 성 가 족 과 7
의견수렴

고 시

- 고 시 제 2 0 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간석1동 청사 신축공사)사업 실시 도 시 재 생 과 19
계획 고시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 2023-332호

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2. 직권말소예정일자 : 2023. 02. 24.
3. 근 거 법 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제7항
4. 공 고 기 간 : 2023. 02. 09. ~ 2023. 02. 23. (15일간)
5.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

업종	신고 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처분원인 및 내 용	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일	직권말소 예정일
휴게음식점	2022-0261085	허니비커피 인천남동공단점	주식회사 허니비프렌즈 최**	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23, 1층 109,110호 (고잔동)	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	2023-01-13	2023-02-24

6. 고 지 사 항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. 2. 23.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☎ (032)453-2622

2023. 2. 9.
남 동 구 청 장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351호

「불법 주·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 단속 개시」행정예고

2022년도 도로개선사업 등으로 이전 설치한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(CCTV) 2개소 단속개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2. 10.

남 동 구 청 장

1. 단속목적 :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
2. 주요내용 :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 개시[2개소]
3. 관련근거
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
 -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
 -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
4. 촬영범위 : 주정차 금지구역 (최대 200m까지)
5. 단속시행일
 - 가. 정식운영(과태료부과단속) : 2023. 2. 22. ~
6.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
 - 가. 단속기준 :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
 - 나. 운영시간

운영	평일	토요일	일요일/공휴일
2개소(구월, 서창)	08:00 ~ 18:30	미운영	미운영

7. 과 태 료 :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6] 및 [별표7]의 부과기준에 따름

※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과태료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

8. 행정예고기간 : 2023. 2. 10. ~ 2. 21. (공고일로부터 12일)

9. 의견제출방법

가. 우편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남동구청)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

나. 팩스 : 032-453-2899 (발송 후 ☎032-453-2897으로 전화 필수)
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

10. 문의사항 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☎032-453-2897

11. 단속실시 장소 ※ [붙임] 단속개시 고정형CCTV 2개소 상세위치

연번	행정동	주소	장소
1	구월3동	구월동 1335-11	구월3동 SR노빌리안2차 오피스텔 인근
2	서창2동	서창동 758	서창2동 한빛초등학교 삼거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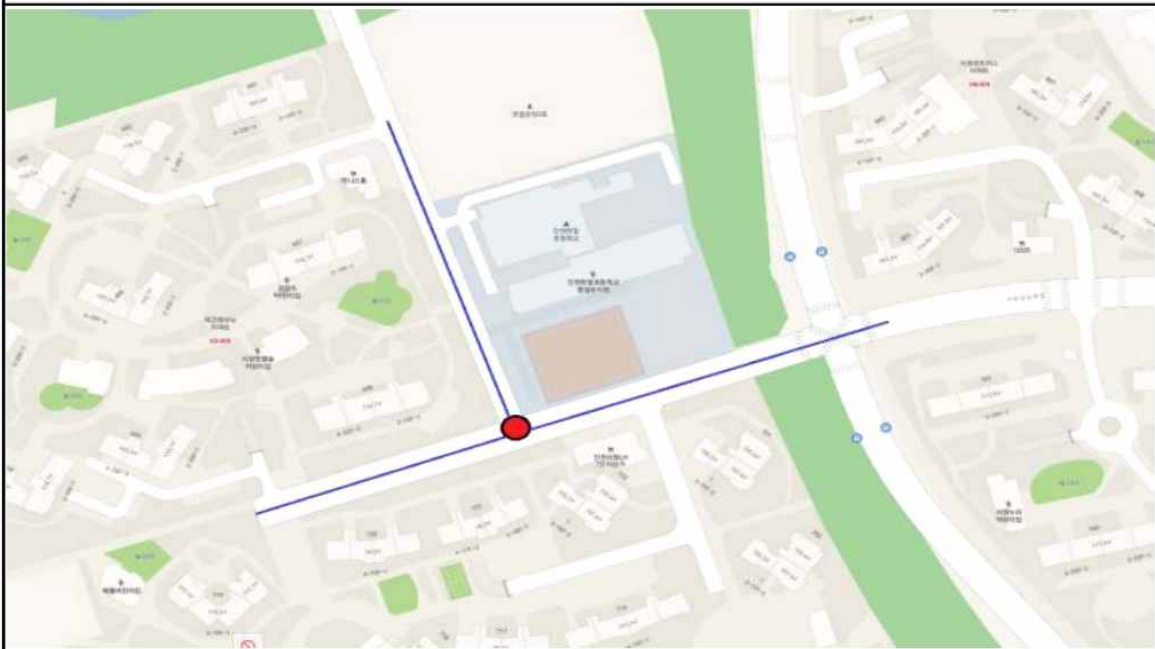
연번 1	주소	구월동 1335-11
	장소	구월동 SR노빌리안2 오피스텔 인근
	운영시간	평일 08:00 ~ 18:30

위 치 도



연번 2	주소	서창동 758
	장소	한빛초등학교 삼거리
	운영시간	평일 08:00 ~ 18:30

위 치 도

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355호

「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2. 10.

남 동 구 청 장**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위원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,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: (안 제3조제3항)
- 자구 수정 및 일부 용어 정비 : (안 제10조제1항~3항, 제10조제5항, 별지 제1호서식)
- 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조항 신설 : (안 제11조~제12조)
-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 변경 : (별지 제1~2호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여성가족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요망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이유)

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
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(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/
☎ 453-5993, FAX 453-5869)
-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/입법예고)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
- 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, 제16조

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위원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,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: (안 제3조제3항)
- 자구 수정 및 일부 용어 정비 : (안 제10조제1항~3항, 제10조제5항, 별지 제1호서식)
- 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조항 신설 : (안 제11조~제12조)
-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 변경 : (별지 제1~2호서식)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
- 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, 제16조

남동구 규칙 제 호

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당연직 위원

- 가.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
- 나.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
- 다.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
- 라.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
- 마.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
- 바.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
- 사. 인천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
- 아.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

2. 위촉직 위원

- 가. 남동구 관내 청소년 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
- 나. 공공의료기관의 장
- 다.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
- 라. 인천보호관찰소장
- 마.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1항 중 “기관간 협조사항”을 “기관 간 협조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명이내”를 “20명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제3조”를 “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

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심의위원회 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심 의 의 결 서

안 건			
주 문			
사 유			
위와 같이 의결한다. 20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			
구 분	성 명	서 명	
위 원 장			
부 위 원 장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
<별지 제2호 서식>

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

					간사	부위원장	위원장	결 재
일시	20 . . .			심의방법			장소	
참석	정원	참석	불참	불참위원				
현황								
안건								
○ 심의내용								
○ 의결사항				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	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	1. 당연직 위원 가.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.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.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라.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.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.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. 인천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.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
2.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	2. 위촉직 위원 가. 남동구 관내 청소년 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장 나. 공공의료기관의 장

3. <u>청소년 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</u> 4. <u>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</u> 5. <u>인천남동경찰서 또는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</u> 6. <u>공공의료기관의 장</u> 7. <u>남동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</u> 8. <u>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</u> 9. <u>중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인천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</u> 10. <u>인천보호관찰소장</u> 11. <u>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	<u>다.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</u> <u>라. 인천보호관찰소장</u> <u>마.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제10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	제10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기관 간 협조 사항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(생략)

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-----
- 20명 이내-----
--.

③ ----- 청소년 업무
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
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그 밖에 -----
-----.

제11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심의위원회 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참고자료]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2.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3.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
②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3-20호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간석1동 청사 신축공사)사업 실시계획 고시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간석1동 청사 신축공사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29조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2. 9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3-4번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- 명칭: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

3. 면적 또는 규모

- 면적: $A=998.3\text{m}^2$
- 규모
 - 건축면적: 597.32m^2
 - 연 면 적: $2,885.57\text{m}^2$

- 주차대수: 23대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남동구청장(재무과)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

5.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건축허가일 ~ 2024.06.30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구 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이름	주소	
1	간석동	353-4	대	998.3	인천광역시 남동구청	-	